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74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정준호·정동영·민병덕

김현정 · 조인철 · 안도걸

임미애 · 윤후덕 · 양부남

차지호 · 김태선 · 박정현

정성호 · 임광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함)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더욱 넓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하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 3.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조성사업 권한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
				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
				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
				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u>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u>
				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
				조성사업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u>자 지정</u>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
				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u>고시</u>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 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5. 세17소세1양에 따는 시구계</u>
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③ 제1항 및 제2항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